

## 울산광역시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- 검 토 보 고 서 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9. 6. 3(수) · 장정옥 · 권순정 · 홍인수 의원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9. 6. 4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9. 6. 15(월)

### 2. 제정이유

-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, 사회참여 확대, 양성평등 의식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 위하여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, 여성발전위원회 설치, 여성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양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의 책무에 관한사항(안 제2조)
-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예산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여성의 구정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구청 산하 직원의 보직, 승진, 포상 등에서 양성 평등과 여성의 상위직 진출확대 노력 및 성차별 개선 등에 관한사항(안 제11조, 제12조)
-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· 운영과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, 제17조)
-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~제31조)
-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2조~제39조)

#### 4. 근거법규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

#### 5. 검토의견

- 가.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우리구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
-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는 상위법 및 울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만으로는 우리구의 여성발전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 코자 하는 사항으로,
  -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, 성차별 개선 등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과, 이러한 여성정책 사업의 심의·자문을 위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, 자금 확보를 위한 여성발전기금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
  -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45개 단체(59%)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울산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및 동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, 남구도 지난 4월 임시회시 의결하여 6월중 공포 예정임.
  - 본 조례의 집행부서 의견은,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현시점에서 기금조성의 어려움과 저금리시대에 따른 이자율이 낮아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수익금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나, 본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, 여성발전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반영의 애로는 있겠으나 본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